

총회에 나올 추천안	하나의 교회 플랜	연대적 총회 플랜	“수정” 전통 플랜
<p>이 요약 표는 &lt;전진 위원회&gt;가 2019 년 특별 총회를 위해 내놓은 추천안들을 요약한 것입니다. 더 자세한 추가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 사이트로 가보시기 바랍니다. <a href="http://www.umc.org/topics/general-conference-2019-special-session">http://www.umc.org/topics/general-conference-2019-special-session</a></p>	<p>요약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성관계는 오직 두 성인 사이의 &lt;일인대 일인 결혼&gt; 언약안에서만 인정된다(그러므로 동성 사이의 결혼도 인정한다).</li> <li>*결혼관에 대해 연합 감리교회가 한 마음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, 개체 교회가 결혼에 대해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.</li> <li>*목사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세속 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&lt;일인 대 일인&gt; 의 동성 결혼을 주례할 수 있다.</li> <li>*장정에 연합감리 교회 소유지 안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용어, 그리고 “동성애 수행을 자인한 사람들”에 대한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제한적인 용어를 삭제한다.</li> <li>*교회나 연회에게 동성행위 자인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으며, 목사들과 개체 교회들의 신앙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용어를 포함시킨다.</li> </ul>	<p>요약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지금 미국 안에 있는 다섯개 지역총회를, 세개의 “연결 총회”로 바꾼다. 세개의 연결 총회는 각각 결혼과 목사안수기준에 관한 정의와 그 정의에 맞는 사안들을 정하고, 이를 기초로 각 총회를 구성한다 - 진보주의 총회, 통합주의 총회, 전통주의 총회.</li> <li>*세개의 총회는 한 “공통” 장정(교리, 보편 원칙들, 신앙고백)을 쓰되, 각 총회의 목회 상황에 따라 (앞의 세개를 뺀) 다른 사항들은 개정할 수 있다.</li> <li>*이 플랜은 각각의 연결총회가 자신의 독특한 실제목회와 연합 감리교 안에 다양한 신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.</li> <li>*이 계획은 수많은 장정 개정이 요구된다.</li> </ul>	<p>요약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동성애에 관한 현행 교단의 입장을 고수하며, 책임소재를 강화한다. 또한 새로와 지고, 자치적인 교회를 강조할 감리교회의 장정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연회, 개체교회,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제공한다.</li> <li>*이 플랜은 사법위원회 결의문 1366 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.</li> </ul>

개체교회들	<p>*개체 교회들은 동성애 목회자들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목회자들을 파송받을 수도 있으며, 파송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.</p> <p>*교단이 개체 교회들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감독에 달려 있다.</p> <p>*교회 소유지 안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할 것인가 혹은 금지할 것인가를 확실한 교회의 정책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(개체 교회가 투표해야 한다).</p> <p>*전체 연합감리교회가 서로 다른 목회 실천으로 짜깁기한 것처럼 될 것이다.</p> <p>*(탈퇴하려는 이들에 대한)은혜로운 출구가 없다.</p>	<p>*개체 교회는 연회가 한 결정에 따르지 않고, 세개 중 하나의 연결 총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. 이럴 경우 (개체 교회가 연회를 동의하지 못할 경우) 그 개체 교회는 어느 연결 총회에 가입할 것인가를 투표해 결정해야 한다.</p> <p>*개체 교회에 목사 파송은 해당 연결 총회 안에서만 이루어 진다.</p> <p>*동성 결혼은 그 개체 교회가 속한 연결 총회가 결정한다.</p> <p>*목회자 안수 기준은 개체 교회가 속한 연결 총회가 결정한다.</p>	<p>*먼저 연회가 연합 감리교회에 남아 있을지 혹은 탈퇴할지를 결정한다. 그리고 개체 교회가 연회 결정에 반대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.</p> <p>*만일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겠다고 결정하면, 남아 있고 싶은 개체 교회는 투표로 여부를 결정한다.</p> <p>*만일 연회가 연합 감리교회에 남겠다는 결정을 하면, 개체 교회는 소속 재산을 가지고 떠나겠다고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. 이 때 탈퇴하는 다른 연회에 가입할 수 있다.</p> <p>*연회가 탈퇴 결정을 하면, 남고자 하는 교회들은 연회 안에 남은 교회들과 재조정을 한다.</p> <p>*탈퇴하는 교회들은 그들의 연금 분담금을 내야 한다.</p>
목회자	<p>*유사한 신학적 입장의 교회와 목회자를 연결시키는 것은 감독에 의존한다. 그러나 목회자는 불일치하는 파송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다.</p>	<p>*목회자는 안수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진출될 연결 총회를 선택한다.</p> <p>*(어디서 받든) 안수는 모든 연결 총회에서 인정되나, 사역은 각 연결 총회의 기준에 따라 행한다.</p>	<p>*목회자는 보장된 목회상의 권리와 함께 (장정의) 현행 동성결혼 금지 조항을 따라야 한다.</p> <p>*감독들은 아무 이유없이 처벌을 임의대로 기각 시켜서는 안된다.</p>

<p>목회자(계속)</p>	<p>*목회자는 양심상의 이유로 동성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다. *LGBTQ 목사 후보자들은, 안수위원회와 연회 목회자 모임에서 허락되면, 안수 받아 파송받을 수 있고, 혹은 허용된 다른 연회로 이적할 수 있다. *감독들과 감리사들의 신앙 양심이 동성애 수행 목회자를 돌보거나 파송하는 데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.</p>	<p>*파송 보장은 연결 총회에 따라 결정된다. *어떤 연결 총회에서는교회 숫자와 목회자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.</p>	<p>*동성 결혼 집행에 대한 첫번째 혐의에 대한 처벌은 일년간 무보수 정직 처분이다. *두번째 혐의에 대한 처벌은 안수증 반납이다. *교회 법이 현저하게 잘못 적용된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개체 교회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. *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은 안수나 파송을 받을 수 없다.</p>
<p>평신도</p>	<p>*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결정은 안수 위원회와 연회 목회자 회의에서 결정되므로, 동성애자 안수에 대한 평신도들의 의견 개진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. *평신도는 교회 소유지 안에서 동성 결혼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인 총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. *평신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 교회에서 동성애자와 동성 결혼 허용을 위한 투표를 보게 된다.</p>	<p>*평신도는 어느 연결 총회에 가입하게 될지에 관한 지역 총회와 연회의 결정에 (지역총회 혹은 연회)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다. *(원한다면) 다른 연결 총회에 가입하기 위한 개체교회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. *자신들은 동의하지 않는데, 그들의 개체 교회는 특정 연결 총회에 가입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을 볼 수 있다.</p>	<p>*평신도들은 연회 대표로서 장정을 강화하거나 혹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기 위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. *평신도들은 어느 개체 교회에서든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는투표를 할 수 있다.</p>
<p>연회</p>	<p>*연회는 투표가 필요없다. 진보적인 입장이 이전 총회때 나온 그대로 채택 되었다.</p>	<p>*지역 총회나 중앙 총회는 단순 다수 투표로 어떤 연결 총회 가입할 것인가를 결정한다.</p>	<p>*연회는 모든 장정을 준수할 것을 확증해야 한다. *장정을 준수하지 않는 연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이름, 표식을</p>

<p>연회(계속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중앙 연회는 자신들의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문제를 문서화해야 한다.</li> <li>*안수위원회와 목회자 회의는 평신도 개입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다.</li> <li>*연회가 전통적인 입장을 채택하려면 목회자 회의가 긍정적으로 절대 다수 투표를 해야 한다.</li> <li>*전통주의자들은 그들의 연회 지역에 명백한 동성애자 감독이 파송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지역 총회나 중앙 총회가 어느 연결 총회에 가입 결정을 했는데, 연회가 그 연결 총회에 들어가기 원치 않는다면 단순 다수결 투표로 다른 연결 총회에 가입 결정할 수 있다.</li> <li>*연회는 매 4 년마다 재 투표할 수 있다.</li> <li>*목회자와 교회는 조직이 바뀌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속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.</li> </ul>	<p>사용할 수 없으며, 총회 재정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연회가 장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단 탈퇴 투표를 할 수 있다.</li> <li>*연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더라도 연회가 원한다면 연합감리교회의 기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협상할 수 있다.</li> <li>*탈퇴하는 연회는 20 만불의 무상 원조를 받을 수 있다.</li> </ul>
<p>감독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전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위한 조직으로 계속된다.</li> <li>*감독은 연회와의 신앙 신조에 맞게 파송된다.</li> <li>*만일 감독의 신앙 양심상 LGBTQ 목사 후보자를 안수할 수 없으면, 안수 할 수 있는 다른 감독을 불러, 이를 수행해야 한다.</li> <li>*개인적인 신앙 양심과 관계없이 그 연회를 이끌어야 한다.</li> <li>*신앙 양심적으로 LGBTQ 수행 목회자를 파송하거나 지도할 경우 감독이 보호받을 수 없다.</li> <li>*모든 감독은 전체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감독회는 감독을 위한 배움과 지원 공동체가 될 것이며, 공동의 협력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. 그리고 관리 권위 기능은 약화 될 것이다.</li> <li>*미국 내 감독들은 오직 그 연결 총회에 의해 적정 수준의 재정을 확보한다.</li> <li>*중앙 총회 감독들은 전체 (연합감리)교회 분담금에 의해 재정을 확보한다.</li> <li>*감독의 권한과 책임은 각 연결 총회에 의해 주어진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감독들은 모든 장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.</li> <li>*장정 준수를 서약하지 않는 감독들은 2021 년부터 비용과 사례를 받을 수 없으며, 다른 자치 감리교회로 떠날 것을 권고한다.</li> <li>*감독들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가진 “독립적인 세계 위원회”가 책임 여부를묻는다.</li> </ul>

		*각 감독은 소속 연결 총회를 선택하고, 그 총회의 요구에 부응한다.	
총회 기관들	*현행대로 유지된다. *명백하게 LGBTQ 행사에 지원한다. *재정 능력이 떨어지면, 위원회와 기관들은 전략적 구조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.	*연금관리회사, 총회재정부, 연합감리교구제부, 문서보관소, 부분적인 세계선교부, 그리고 Publishing House 는 전 교회적으로 재정 확보. *특별 대책반이 각 총회 기관들을 평가하여 2025 년까지 새로운 연합감리교회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. *프로그램 기관들은 관계가 결정되는 연결 총회만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.	*모든총회 기관과 위원회들은 그대로 유지된다. *각 기관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치 감리교회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. *재정능력이 떨어지면 위원회와 기관들은 전략적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다.
총회 기관들(계속)			
연관 기관들	*연관조직들에 대한 변화는 없다. *일부 독립적인 보수적 기관들은 더 이상 연합감리교회와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.	*연회나 지역총회가 가진 재산들은 새로운 연결 총회에 속하게 된다. *기관들은 내규가 허락하는 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연결 총회들과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.	*기관의 내규가 허락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한 변화 없다. *만일 연회가 연합 감리교회를 탈퇴한다면, 소유하던 기관이나 연관된 기관들은 그들이 내규에 규정된 연결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연회와 함께 떠난다.
재정과 연금	*Westpath 는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두개의 제안을 추천해 놓은 상태다.	*Westpath 는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두개의 제안을 추천해 놓은 상태다. *Westpath 는 변함없이 존속하여 연결 총회와 협력할 것이다.	*Westpath 는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두개의 제안을 추천해 놓은 상태다. *탈퇴하는 교회들은 미 지급 연금 (1982 년 이전 목회했던 은퇴자에

		*Westpath 는선택된 연결 총회에 따라 교회들과 연금 지급액을 분배할 것이다.	약속한 연금)의 적정액을 지불해야 한다. *탈퇴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추정된 미래 연금을 개인의 투자 계정으로 전환시켜 줄 것이다.
감독 기금	*무변화	*중앙 총회는 무변화; 미국내 교회들은 연결 총회에 따라 사례와 비용이 산정.	*무변화
Central Conference(중앙 지역 총회)  중앙 총회(계속)	현재 LGBTQ 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목사 안수나 동성결혼 실행에 관한 사항은 연회 자체로 결정 문서화 할 필요가 있다. 혹은 총회가 결정한 문서에 따라 행할 수 있다.	*중앙 연회는 자체적으로 연결 총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, 미국의 세계 연결총회 중 하나에 합류를 택할 수도 있다. *중앙 연회는, LGBTQ 수행 감독들도 참여하는 전체 교회의 감독회의 회원이 될 수는 있으나, 중앙 연회의 권한은 그들이 섬기는 연결 총회에 제한된다. *중앙 연회는 LGBTQ 수행 목회자들과 또 일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교회들이 존재하는 교회의 일부가 된다.	*현행 제도에 변화가 없다. 다만 교회의 장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며,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새로 분리된 자치 감리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 받게 된다.